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2003.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이 조성한 “평창무이예술관” “평창덕거연극인촌” “평창용전오페라학교”에 대하여 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마련하고, 본 시설을 문화예술전문가들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므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자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목적과 시설 및 기능(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시설운영주체 및 시설위탁대상 및 기간
(안 제4조, 제5조)
- 다. 수탁자선정 및 수탁적격자 심사 방법(안 제6조, 제7조)
- 라. 위탁조건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
으로 자립기반 마련 (안 제8조, 제9조)
- 마. 협약체결 내용 및 수탁자 준수사항(안 제10조, 제11조)
- 바. 군수나 지역주민등 제3자 필요시 시설사용근거 마련(안 제12조)
- 사. 위탁협약 위반시 조치사항 및 위탁자의 지휘감독 근거(안 제13조
제14조)
- 아. 기타 준용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에 위임(안 제15.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04년 당초 요구
-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 없음
- 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실시, 규제심사 필요없음.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학습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스튜디오 제공
2. 창작활동에 필요한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등 제공
3. 각종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4. 아트샵 및 휴게실 운영
5. 작은 도서관과 박물관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6. 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운영주체) 군수는 이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 문화예술법인·단체나 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제5조(시설위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등록된 문화예술 법인·단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인
2.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3. 기타 유명 문화예술인으로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②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교를 창작스튜디오시설로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는 최초 위탁일부터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제1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문화예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5.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6. 창작스튜디오 세부운영계획, 관람료, 입장료, 상품판매 등 수익사업계획

제7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신청자가 1수탁자인 경우나, 제출서류를 서면 검토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탁조건) ①창작스튜디오 및 숙소는 무료제공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이 조례나 협약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중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재산·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관람료 또는 입장료 징수방법,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허가 등) 위탁시설에 대하여 군수나 지역 주민 등 제3자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협약의 해제 등) ①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시설관리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지휘·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시설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평창무이예술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58번지	
2	평창덕거연극인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387-3번지	
3	평창용전오페라학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6927호]

-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 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② 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改正 1994.3.16>
③ 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의외의 모든 財産의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 第135條 (公共施設)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定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우
2.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경우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한 경우에는 第83條 第2項 및 第8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1.21>
③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④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자가 그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管理를 소홀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의외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加算金を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83條 (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② 雜種財産의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및 私權設定에 관한 사항과 貸付料率, 貸付料의 算定方法, 貸付料의 減免, 價格評價, 賣却代金納付方法, 代物辨濟의 범위등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개정 1999.1.21>

- 第84條 (契約의 解除등)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雜種財産을 貸付·賣却 또는 讓與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貸付·賣却 또는 讓與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1. 雜種財産을 貸付받거나 買受 또는 讓受한 자가 그 貸付·買受 또는 讓受에 있어서 虛偽陳述이나 虛偽證憑書類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用途를 지정하여 雜種財産을 賣却 또는 讓與한 경우 買受者 또는 讓受者가 지정된 期日을 경과하여도 그 用途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用途에 제공한 후 지정된 期間내에 그 用途를 廢止한 때
3. 貸付한 雜種財産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또는 公共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4. 貸付받은 雜種財産의 管理를 懈怠하였거나 그 貸付目的에 違背하여 사용한 때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를 解除 또는 解止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權利의 회복에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하여 그 相對方에게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그 財産을 사용할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 ④ 雜種財産의 貸付를 받은 者 또는 買受者가 그 貸付料 또는 買受貨金を 納付期日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貸付 또는 賣買契約를 解除하거나 地方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할 수 있다.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 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0.10.20>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2002.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1.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29>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90.11.6,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1.29>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써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의 외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중·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94조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4조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9.15>

명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1988. 3. 8 조례 제1094호

개정 2003. 7. 19 조례 제1722호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2003.7.19 개정>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3.11.16, 99.11.4, 2001.11.6>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②행정재산 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삭제<99.11.4>

6. 삭제<99.11.4>

7.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9. 허가조건

제15조(사용 수익 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1.11.6>>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1.6>

⑩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1999. 11. 4 조례 제1609호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물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